한국음악저작권협회 특별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▣ 감사기간 : 2010. 10. 13. ~ 11. 5. (18일간)

▣ 감 사 반 : 감사담당관 ○○○ 외 4명

▣ 감사내용

○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전반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건, 천원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현지 조치	모범 사례
							주의·경고	시정	개선	통보 등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11	95,265				1	1	3	2	6			

※ **첨부서류**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○ **(주)○○와의 합의 및 합의금 사용 부적정** - 전 ○○(○○○)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(주)○○의 과거('03.6.1.~'05.10.4.)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'07.3.6. (주)○○와 합의하였고, 그 대가로 합의금 25억 원(저작권 사용료 10억 원, 복지기금 7억 원, 8억 원 상당 광고)을 받았는데, 복지기금 명목 7억원을 신탁계약자 피해배상이 아닌 원로회원복지기금으로 합의한 것과 동 7억 원을 원로회원에게만 분배한 것은 신탁계약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됨.	○ **주의요구(고발 예정)** - 신탁저작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약관 등을 준수 ※ 전 ○○(○○○) 형사고발(배임죄)
2	○ **미분배 저작권 사용료 과다 적립 및 이자 수입 사용 부적정** - 저작권 사용료는 분배시기에 따라 신속하게 신탁계약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데도,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 후 이에 대한 분배자료 확보 지연 등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지 않은 미분배금(450억 원/ '10. 8월 현재)이 과도한 상황임. -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(연평균 12억 원/ 일반회계 수입의 8%)는 저작권사용료가 그 원천이므로 신탁계약자들에 분배하여야 하는데도 협회 경비로 사용	○ **개선요구** - 미분배금액이 과도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미분배금액을 조속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- 협회 정관 및 신탁계약약관을 개정하여 신탁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신탁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개선
3	○ **저작권사용료 미수금 관리 부적정** -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소 등에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한 미수사용료(34억 원/ '10.8월)는 1년 이상 경과하면 부실채권으로 지정하여 보다 철저한 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부실채권 기준을 3년 이상 연체한 업체로 정하고 있어, 효과적인 미수사용료 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협회 재정 건전성을 훼손 - 노래방, 단란주점 등 협회 지부(11개)에서 관리하는 노래방 등의 업소가 연체한 저작권사용료(50억 원/ '09년)는 신탁회계에 미수사용료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결산에서 누락	○ **개선 요구** - 미수금 회수 독려 및 부실채권 정리, 지부별 연체금액 미수사용료에 반영해서 재무제표에 계상
4	○ **공연사용료**(노래연습장, 유흥·단란주점) **분배업무 부적정** - 노래연습장, 유흥단란주점 등의 공연사용료(291억 원/ '09년)는 51,452개(반주기 238,953대를 설치) 노래방 등의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가운데 1,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동 업소에 설치된 반주기중 1,200대를 샘플링하여 음악이 사용된 숫자(로그데이터)에 따른 분배자료를 근거로 공연	○ **개선요구** - 저작권 관련 법령의 개별 권리 보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전수조사방식 (온라인 시스템 등)으로 개선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음. - 이러한 샘플링 방식의 분배자료는 통계학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사용료가 음악이 사용된 횟수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어 온라인 시스템 등 전수조사방식 필요	
5	○ **방송사 저작권 사용료 징수·분배 업무 부적정** -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 자료를 제공받지 않은 채로 사용료를 분배하고, 방송사에서 사용한 음악 분배자료의 34%를 차지하는 배경음악 등은 모니터링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사용하여 저작권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어, 방송사에서 징수된 저작권사용료(172억 원/ '09년)가 음악 사용횟수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.	○ **주의요구 및 권고** - 협회 : 방송사에게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사용내역을 정확히 요구하고, 이를 근거로 분배업무를 처리(주의) - ◈◈◈◈◈◈ : 방송사에게 협회 신탁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에 규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(권고)
6	○ **협회 회원 자녀 특별채용 부적정** - 채용공고 등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력서만 제출받아 ◈◈의 내부결재만으로 협회 회원 자녀(3명)가 포함된 4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특별채용 ('10.7.14. / '10.8.2.) - 이는 회원의 직원 채용을 금지한 협회 정관의 취지 및 채용기준, 선발방법 등을 ◈◈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협회 인사규정에 위배됨과 동시에 ◈◈이 협회의 제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임.	○ **경고 및 개선요구** - ◈◈ 경고 및 3개월 내 구체적인 직원채용규정 마련
7	○ **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** - 현 ◈◈은 '09.12.23. 당선되어 '10.2.19. 취임하였는데, 임원에게만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회 정관 및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을 위반하면서 '10.3.4.자로 「◈◈ 당선인 예우규정」을 제정하여 임원이 아닌 ◈◈ 당선인에게 ◈◈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및 차량지원비(당선일부터 취임 전까지 개인카드 등으로 사용한 것) 15,465천 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. -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◈◈에게 이와 별도로 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개인소득이 아닌 공적 업무수행경비이기 때문에 ◈◈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◈◈이 사용한 곳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◈◈은 그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하는데도, - 전 ◈◈ : '09. 1. 1.~'09. 12. 31. 기간중 총 84,000천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, 경조비로 사용한 4,200천 원 외에 79,800천 원은 본인이 서명한 현금 수령증만 첨부하였을 뿐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하지 않아 사용	○ **시정(환수), 경고 및 개선요구** - ◈◈ 경고 - ◈◈ 당선인(○○○)에게 소급 지급한 15,465천 원과 전 ◈◈(○○○)에게 지급한 79,800천 원 등 총 95,265천 원 회수(2개월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예정), 업무추진비지급규정 개정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용도를 알 수 없으며, 협회 규정에서 정한대로 적격증빙을 하지 못한 업무추진비(79,800천 원)는 연말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(이를 악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편법 지급, 개정 필요)하여야 하는데도 연말 근로소득 정산시 이를 누락했음. - 현 ◆◆ : '10. 2. 19.~'10. 9. 30. 기간중 현금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48,756천 원이며, 그 가운데 17,280천 원 역시 위와 같이 그 사용 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.	
8	○ **회계간 무분별한 자금 차입으로 회계 건전성 훼손** - 회관 건립을 위해 '00년 상환 조건으로 신탁회계 미분배금에서 '98-'99 차입한 20억 원을 상환(*본 감사가 종료된 12월 451백만 원 상환)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SI(전산시스템) 구축비용으로 10억 원을 신탁회계에서 차입('08.3월)하는 등 엄격하게 구분·운영하여야 할 신탁계약자들의 재산인 신탁회계 자금을 협회 경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차입하여 회계 건전성을 훼손시킴.	○**개선요구** - 신탁회계 차입금을 조속 상환하고, 회관 건물 및 SI(전산시스템) 신탁회계에 계상하여 관리
9	○ **저작권신탁계약자 의견수렴 방법 개선필요** - '09. 3.18. 모든 신탁계약자의 협회 회원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신탁계약자 11,875명(정회원 782, 준회원 8,971, 비회원 2,122)중 18%에 해당하는 2,122명의 비회원이 발생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, 협회 신탁계약자의 7% 정도인 782명의 정회원으로만 구성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리하는 등 기존 협회 회원의 의견과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	○**개선요구** - 기존 법인 및 신탁관리업 사무를 구분 운영하고 비회원 신탁계약자 의견수렴 장치 마련
10	○ **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** -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부가 처분한 명령을 협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5천만 원 이내로 부과·징수할 수 있음 (저작권법 제108조 및 제111조) - 그런데, ◆◆◆◆◆◆는 '06년부터 매년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 개선요구사항을 협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, 협회에 위 조치를 취할 경우 신탁계약자 등에게 그 피해가 크다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, 이행 촉구 등의 독려만 하였을 뿐 저작권법에 따른 과징금(최대 5천만 원)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 ※ '06~'09 기간중 시정·권고한 사항중 주요 시정사항(①이자수입 분배 ②14개 위원회 통·폐합 ③신탁회계 차입금 조속 상환 ④업무추진비 투명 집행 등)은 미이행	○**시정요구 및 기관경고** - ◆◆◆◆◆◆ 경고 및 저작권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조치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1	○ **저작권 관리수수료 승인 제도 및 신탁회계 제도개선** - 저작권 사용료 징수·분배비용인 관리수수료 요율은 문화부의 승인사항으로서 요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저작권 사용료 증가에 따라 관리수수료 총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◈◈◈◈◈◈가 관리수수료 요율을 승인하는 때에는 요율뿐만 아니라 관리수수료 총액을 모두 검토하고 원가계산 등도 실시 하여야 하는데도, ◈◈◈◈◈는 단순히 요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만 협회로 하여금 문화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. - 저작권사용료를 징수·분배하는 것은 저작권신탁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된 경비인 관리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(신탁업무 및 협회운영 경비)에서 신탁업무 경비는 신탁회계로 이관하여 명확하게 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, 이 신탁회계는 관리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회계이므로 신탁회계 예산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도록 저작권법 등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	○**개선요구 및 권고** - **◈◈◈◈◈◈ :** 협회로 하여금 매년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·분배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산출토록 하고, 그에 맞는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총액을 승인하는 방안 강구, 협회가 신탁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문화부장관 승인받도록 조치(권고) - **▣▣▣▣▣▣▣ :** 저작권 사용료 징수·분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신탁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하여 신탁회계와 일반회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협회의 회계구조 개편